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영업권”으로, “특별계정”을 “특별계정(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음성녹음하는”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저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화상을 송·수신하는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화상통화”라 한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화상통화를 이용할 것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저장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3.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단, 제4항제2호 각목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6조 중 “3만원”을 “3만원(다만, 보장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 현물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을 말한다.

제51조 중 “법 제107조”를 “법 제107조제2항”으로, “1년”을 “법 제10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 또는 자금 차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4의2.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 및 제4호의2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

상이 아닌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제1항제4의2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 보험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3.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법 제1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5. 법 제114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또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대표이사 제출사항) 법 제184조의3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5조제3호의 기초서류를 말한다.

제95조의3(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법 제181조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95조의4(선임계리사의 지원조직)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지원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조원 이상이며 20조원 미만일 경우 3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20조원 이상이며 50조원 미만일 경우 4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0조원 이상이며 100조원 미만일 경우 5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호의 지원인력만을 둘 수 있다.

1. 보험 계리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
2. 보험상품 개발, 기초서류 검증 등 보험상품 관련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

③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와 지원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담당

부서가 연1회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선임계리사는 지원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제1항에 따른 최소 지원인력의 1/2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지원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본체장비, 입출력장치,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96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단체의 장(이하 “한국보험계리사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2. 법 제19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리사 허가 등의 공고

제10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별표9 제2호 중 저목의 “법 제209조제4항”을 “법 제209조제4항제1호”로 하고, 처목의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
다만, 소속 보험설 계사가 100명 미만 인 법인보험대리점 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별표9 제2호에 라목부터 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라.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6호	5,000
마.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7호	5,000
바.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8호	5,000
사.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에게 직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법 제209조 제4항제2호	3,000 다만, 선임계리사의 경우에는 600 만원으로 한다.
야. 보험회사가 법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	법 제209조 제4항제3호	3,000

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특별계정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제50조·제58조·제58조의2·제58조의3·제95조·제95조의2·제95조의3·제95조의4·제96조·별표9 제2호 저 목 및 라목부터 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 호처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09조제7항제2호의4를 위반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 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 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 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전자증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 <u>미상각신계약비</u> (未償却新契約費), <u>영업권</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u>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u> 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u>특별계정</u> 자산을 말한다.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 ----- <u>영업권</u> ----- ----- ----- <u>영업권</u> ----- ----- -- <u>특별계정(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은 제외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생략)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u>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u> 하며, 우편이나 팩스	② ----- ----- ----- ----- ----- ----- ----- ----- ----- ----- ----- <u>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u>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 ⑩ (생략)

<신설>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

-----.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화상을 송수신하는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화상통화”라 한다)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화상통화를 이용할 것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저장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3.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단, 제4항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
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신
설>

① (생략)

제2호 각목에 따라 자필서명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 3만
원(다만, 보장위험의 감소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
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 현물
의 경우에는 20만원) ---.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
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
험계약 특별계정 자산을 말한
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증거
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
는 약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파
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
는 위탁증거금

2. 장외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
상품의 거래구조 등을 반영하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약
정금액

③·④ (생략)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
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
터 1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

<삭 제>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

-- 법 제10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4의2.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종 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조건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차입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58조의2(자금의 차입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 또는 자금 차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4의2.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

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
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
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
및 제4호의2에 따른 신종자본증
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
정사유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
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
사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
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
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
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요건에 맞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신 설>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제1항 제4의2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 보험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
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
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
하여야 하는 사항

3.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
에 관한 사항

4. 법 제1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
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5. 법 제114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
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
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
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
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
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
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
다는 뜻

2.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
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
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
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

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8. (생략)

<신설>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

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

-----.

1. ~ 8. (현행과 같음)

9.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또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

제95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삭제>

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34조
제1항제1호(경고·문책만 해
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
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
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
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5조의2(선임계리사 검증의견
서의 대표이사 제출사항) 법 제
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
5조제3호의 기초서류를 말한다.

제95조의3(손해보험회사 선임계
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
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법 제
181조제3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95조의4(선임계리사의 지원조
직)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지원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이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조원 이상이며 10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조원 이상이며 20조원 미만일 경우 3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20조원 이상이며 50조원 미만일 경우 4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50조원 이상이며 100조원 미만일 경우 5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10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 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호의 지원인력만을 둘 수 있다.

1. 보험 계리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

2. 보험상품 개발, 기초서류 검증 등 보험상품 관련업무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보험계리사 1인 이상

③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와 지원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담당부서가 연1회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선임계리사는 지원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제1항에 따른 최소 지원인력의 1/2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지원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제9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① 법 제184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선임계리사는 법 제184조제1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본체장비, 입출력장치, 통신 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96조(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 삭제 >

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등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및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

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
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
탁) ① ~ ⑤ (생략)

<신설>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① ~ ③ (생략)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
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계
리사 단체의 장(이하 “한국보험
계리사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
사의 등록업무

2. 법 제19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리사 허가 등의 공고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1. ~ 5. (생략) <u><신설></u> ⑤ ~ ⑧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6. 제84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u> <u>지급 등에 관한 사무</u> ⑤ ~ ⑧ (현행과 같음)
--	--